

##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 종목의 명칭 : 원화환산납입특약

2. 적용대상

외국통화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에서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를 통해 대한민국법화(이하 “원화”라 합니다)로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원화 환산에 관한 사항

가. 원화환산은 주계약 보험료에 해당하는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한다.

나.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산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하“환산기준일”이라 합니다)이라 한다.

다. 환산기준일은 제 2 회 이후 주계약 보험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의 직전일 영업일로 한다.

라. ‘다’항의 환산기준일은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이하 “주거래 은행”이라 한다)의 영업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환산기준일이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로 한다.

마. 원화 환산율은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최종고시환율)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원화환산율로 한다.

4. 기타사항은 주계약 사업방법서를 적용한다.